

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행정규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개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인용법령등 체계·자구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가. 행정규칙의 정의, 형식, 제·개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비
- 나. 법령안등의 부내외 협의 기간 10일 이상으로 규정
- 다. 기타 인용조문, 자구 등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규칙”이란 중소기업부장관이 훈령·예규(그 명칭에 관계 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고시·지침·공고·지시·규정·규칙·통첩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법령의 주관부서)”를“(법령등의 주관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법령”을 각각 “법령등”으로 한다.

- ① 법령이나 행정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폐지는 해당 법령등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제6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7조제6항 전단 중 “법제처에”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로 한다.

제8조 앞에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결재 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9조의 법제검토 및 제15조제1항의 사전검토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계기관 의견협의서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를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를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규제영향분석서”로, “작성하여 첨부”를 “첨부”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다목 중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를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관부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를 “주관부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0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로 한다.

제20조제3항제7호 중 “별지 제4호의 정책결정”을 “정책결정”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을 조문형식 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다른 형식을 따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견조회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령안”은 “행정규칙 발령안”으로 본다.

제3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견조회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행정절차법」 제46조”를 “「행정절차법」 제4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제15조를 준용하여 규제심사를 거쳐야한다. 이 경우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법령안”은 “행정규칙 발령안”으로 본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행정규칙의 발령번호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행정규칙이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개정 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주관부서에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중 “등(이하 이 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에”를 “등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행정규칙</u>”이란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지침·공고·지시를 말한다.</u></p> <p>3.·4. (생 략)</p> <p>제4조(법령의 주관부서) ① <u>법령의 제정·개정·폐지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u></p> <p>② <u>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u></p> <p>③ <u>관계부서는 제정·개정·폐지 이유, 주요 내용 및 제정·개</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행정규칙</u>”이란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훈령·예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고시·지침·공고·지시·규정·규칙·통칙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u></p> <p>3.·4. (현행과 같음)</p> <p>제4조(법령등의 주관부서) ① <u>법령이나 행정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폐지는 해당 법령등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u></p> <p>② <u>법령등</u>----- ----- ----- ----- -----.</p> <p>③ ----- -----</p>

정·폐지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입법계획의 수정) ① (생략)

③ (생략)

<신 설>

제7조(법령안 입안) ① ~ ⑤ (생략)

⑥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안단계에서 법제처에 법리적 쟁점 검토 및 조문화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8조(부내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려는 경우 부내 관계부서에 법령안을 보내

--- 법령등-----
-----.

④ ----- 법령등-----

-----.

제6조(입법계획의 수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7조(법령안 입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 -----
-----.

<삭 제>

제8조(부내 사전협의) ① -----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생략)

제10조(법령안의 결재)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1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생략)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별지 제1호의 의견조회용 서식

3. (생략)

③ (생략)

제14조(각종 평가 등)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법령안의 결재)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결재 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9조의 법제검토 및 제15조제1항의 사전검토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1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관계기관 의견협의서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각종 평가 등) -----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 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

가. 부패영향평가서

나. 법령안

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가.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및 체크리스트

나. 법령안

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서

나. 법령안

4.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가. 통계기반 정책 (예비)평가

----- 관계기관 -----

-----.

1. -----

<삭 제>

<삭 제>

2.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삭 제>

<삭 제>

3. -----

<삭 제>

<삭 제>

4. -----

<삭 제>

1. (생략)

2. 법제정보시스템 등록 :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1일전까지 법제처에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을 의뢰

가.·나. (생략)

다. 규제영향분석서(규제가 없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라.·마. (생략)

② ~ ⑦ (생략)

제17조(서식 승인 신청) ① 주관 부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1. ~ 3.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경우 -----

라.·마.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서식 승인 신청) ① 주관 부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0조 --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20조(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①

· ② (생 략)

③ 주관부서는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법령안 상정을 위해 해당 회의 개최일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한 문서관리카드(내부결재)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별지 제4호의 정책결정 사전 점검표

④ (생 략)

제28조(행정규칙의 입안)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설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7. 정책결정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행정규칙의 입안)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을 조문 형식 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다른 형식을 따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제3항-----

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행정규칙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심사 등) ①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의 제·개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업무 운영 훈령」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생략)

제32조(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

① (생략)

<신설>

견조회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
----- 「행정절차법」 제46조-----

--.

제31조(규제심사 등) ①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제15조를 준용하여 규제심사를 거쳐야한다. 이 경우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법령안”은 “행정규칙 발령안”으로 본다.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행정규칙의 발령번호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행정규칙이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개정 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주관부서에 보완을 요청

②·③ (생략)

제34조(유권해석의 권한) ① 주관
부서는 소관 법령, 행정규칙 및
공문서 등(이하 이 장에서 “법
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권해
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 (생략)

할 수 있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34조(유권해석의 권한) ① ----

---- 등에 -----

-----.

② (현행과 같음)